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2023. 12. 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3-179
----------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3. 11. 17.
- 다. 회 부 일 : 2023. 11. 20.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3.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 가. 세 입
 - 해당 없음.
- 나. 세 출
 -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4억5,07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39억2,226만9천원 대비 13.47% 증액된 규모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4,450,700	3,922,269	528,431	13.47%
정책사업	1,874,220	1,830,082	44,138	2.41%
행정운영경비	2,576,480	2,092,187	484,293	23.15%

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4,450,700	3,922,269	528,431	13.47%
일반공공행정	1,874,220	1,830,082	44,138	2.41%
입법및선거관리	1,874,220	1,830,082	44,138	2.41%
선진의회상 정립	1,874,220	1,830,082	44,138	2.41%
의정활동 지원	1,776,440	1,753,576	22,864	1.30%
의정활동 홍보	97,780	76,506	21,274	27.81%
기타	2,576,480	2,092,187	484,293	23.15%
기타	2,576,480	2,092,187	484,293	23.15%
행정운영경비	2,576,480	2,092,187	484,293	23.15%
인력운영비	2,401,596	1,921,288	480,308	25.00%
기본경비	174,884	170,899	3,985	2.33%

-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의회 전체 예산의 42.11%, 18억7,422만원으로 전년대비 2.41%, 4,41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5억7,648만원으로 전년대비 23.15%, 4억8,42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음.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의회사무국	4,450,700	3,922,269	528,431
선진의회상 정립	1,874,220	1,830,082	44,138
의정활동 지원	1,776,440	1,753,576	22,864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694,785	1,671,921	22,864
인건비	40,499	40,499	0
일반운영비	141,221	114,456	26,765
여비	44,350	41,880	2,470
업무추진비	53,494	50,494	3,000
직무수행경비	17,857	15,225	2,632
의회비	1,303,242	1,272,137	31,105
일반보전금	5,400	0	5,400
포상금	3,200	10,000	△6,800
연금부담금등	39,600	39,600	0

(단위:천원)

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비및부대비	13,810	8,390	5,420
자산취득비	32,112	79,240	△47,128
국외 선진의회 연수	81,655	81,655	0
일반운영비	980	980	0
의회비	80,675	80,675	0
의정활동 홍보	97,780	76,506	21,274
의정활동 언론 홍보	33,000	33,000	0
일반운영비	33,000	33,000	0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64,780	43,506	21,274
일반운영비	43,000	43,506	△506
행정운영경비(구의회사무국)	2,576,480	2,092,187	484,293
인력운영비(구의회사무국)	2,401,596	1,921,288	480,308
인력운영비	2,401,596	1,921,288	480,308
인건비	2,401,596	1,921,288	480,308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174,884	170,899	3,985
기본경비	174,884	170,899	3,985
일반운영비	111,683	111,638	45
여비	40,320	36,540	3,780
업무추진비	15,081	14,921	160
직무수행경비	7,800	7,800	0

○ 주요 증액사업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행사실비지원금(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 540만원(신규)
- 자산및물품취득비(컴퓨터 속기기계 구매) : 2,178만원(신규)
- 의원국내여비(의원의 관외 출장시 집행경비) : 1,963만원(69.88%)
- 시설비(의원연구실 등 부속실 환경개선) : 1,381만원(64.60%)
- 행사운영비(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 240만원(60%)
- 공공운영비(음향영상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 1,680만원(60%)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 1,170만원(51.95%)
- 의장협의체부담금(의장단 협의체부담금) : 1,000만원(42.86%)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포상금(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 320만원(△68.00%)
- 자산및물품취득비(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 2,811만2천원(△62.64%)
- 공공운영비(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 1,215만2천원(△3.80%)

4.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포구 전체 예산액의 0.53%인 44억 5,0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억2,226만9천원 대비 13.47%, 5억2,843만1천원 증액된 규모임.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선진의회상 정립’ 사업 예산 18억7,42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5억7,648만원임.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286만4천원(1.37%) 증액된 16억9,478만5천원을 편성했음.
- 속기사무보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4,049만9천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운영비는 전년 예산 대비 2,676만5천원, 23.38% 증액된 1억4,122만1천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 내역은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1,970만원), 차량 유지비(1,700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16개) 구입비(1,073만6천원), 인사위원회 심사수당(360만원), 경하기 사용료(144만

원), 의장 의전차량 렌트비(910만8천원), 의원 독감백신 구입(32만3천원), 전자회의시스템 연간 유지 보수비(833만1천원),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1,680만원) 정년퇴임식 관련 행사운영비(480만원),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행사 지원(24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여비는 전년 예산 대비 247만원(5.9%) 증액된 4,435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교육여비 증편성(80만원→190만원) 및 의정연수 수행경비 인원의 증가(16명→20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일비, 숙박비, 식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의정운영 관련 직원들의 전문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여비를 증액한 사항임.
- 업무추진비는 전년 예산 대비 5.94%, 300만원 증액된 5,349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인사업무와(100만원) 퇴임직원 등 업무추진(100만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 업무(100만원)를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임.
-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예산 대비 17.29%, 263만2천원 증액된 1,785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직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과 한시임기제 1명) 대민활동비로 증액 편성한 것임.
-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의회비는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 대비 2.45%, 3,110만5천원 증액된 13억324만2천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제1차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으로 의원의 공청회 및 토론회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발제자와 토론자의 수당을 편성한 것임.
- 포상금은 직무유공 공무원(의회직 대상) 표창 부상품 및 정년, 명예퇴

직 공무원의 근속위로경비와 격려금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680만원(△68%) 감액된 320만원이 편성되었음. 감액 사유로는 유공공무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의회 소속기관 외 공무원에게 부상품 수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 조정하고(30명→6명) 정년·명예 퇴직자 발생 감소(3명→1명)에서 기인된 것임.

- 시설비및부대비는 부속실 환경개선을 위한 가구 설치와 공간 재구성 및 냉난방시설 비용으로 전년 예산 대비 542만원(64.6%) 증액된 1,381만원이 편성되었음.
- 자산취득비는 직원 사무용 전산장비와 부속실 및 탕비실 냉장고 구매 비용등으로 전년 예산 대비 △4,712만8천원(△62.64%) 감액된 2,8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음.
- “국의 선진의회 연수”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의회비(의원국외여비)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전년 예산과 동일함.
-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의정활동시 필요한 기획보도비용과 지역신문 광고금액으로서 전년과 사업내용은 대동소이나 컴퓨터속기 기계 구매(4대)로 2,178만원 편성되어 전년 예산 대비 2,127만4천원(27.81%) 증액된 9,778만원이 편성되었음.
 - ▶ ‘의정활동 언론 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동결
 - ▶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의 회의록 제작비 78만4천원 증액
 - ▶ 사진 인화료 △81만원 감소
 -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8만원 감소(월1,003천원→963천원) 등을 반영 하였음.
- “행정운영경비” 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됨.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2.5%)를 반영하고 기정 현원(16명) 기준 편성사항을 정원(24명) 기준으로 재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인력 추가 선발 계획에 따라 한시임기제 1명 7개월분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4억8,030만8천원(25%) 증액된 24억159만6천원이 편성되었음.
- 기본경비는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며 의회사무국 직원 증가로 전년 예산 대비 398만5천원(2.33%) 증액된 1억7,488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5. 검토의견

-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44억5,07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39억2,226만9천원 대비 5억2,843만1천원(13.47%) 증액 편성됨.
- 의회 사무국 예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되었음. 이에 따라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고려하여 편성 제출됨.
- 이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은
 - ▶ 내용연수(5년) 경과에 따른 노후화 및 기능 저하로 사무용 행정전산장비(PC, 모니터) 구매와 냉장고 구매(5대),
 - ▶ 의원연구실 부속실 환경개선을 위한 싱크대 및 주방가구 재구성(의장, 의원 연구실)
 - ▶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MS 오피스, 한글)
 - ▶ 공무원증과 부속품, 임용장, 케이스 구매
 - ▶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 ▶ 시책업무추진비(인사업무추진, 퇴임직원 등 업무추진, 연구단체 운영 지원

업무추진)

▶ 컴퓨터 속기기계 구매(4대)

▶ 공청회·토론회 운영 지원(발제자, 토론자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음.

- 이 같은 신규 사업들은 의회 시설의 유지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발굴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
- 의회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으로 전년도 총액한도¹⁾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2024년도 의회 총액한도는 3억7,740만원으로서 산정범위 내 있음.
- 다만,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성목별 세밀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의정활동 소요경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첫째, 의회 청사 시설 관련 예산은 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및 사후 보강의 측면에서 임기응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한 유지관리 중장기계획의 마련으로 편성·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의정 활동 다양화로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 또한 강화해야 하므로 자기개발 및 전문·실무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위탁교육훈련 계획이 필요하고, 사기진작 차원의 적극적인 복리후생 예산 마련을 위해 구청과 의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의회 조직에 맞는 인재상을 마련하여 탄력성을 이유로 임시적인 인력 운영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안정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적인 조직·정원 관리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 셋째, 선진의회 정립과 관련한 의원의 공무상 국외연수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예산편성 규모는 총액한도제 제한으로 한계성이 있으나 현실물가를 반영한 계상 방법이 요구되어 짐. 아울러,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지적²⁾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례적 연수계획이 아닌 국내외 학술 세미나와 포럼 등의 참석 목적이 있는 혁신적인 연수 계획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의원국외여비는 경비의 위법 집행 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³⁾ 예산 삭감 등 제재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립되어 있는바, 혁신적인 국외 연수 선진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넷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대상은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불가함. 연구단체별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 정책연구용역비로 발주 가능한데, 제한된 인원 속에서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면 소규모 용역이 발주되어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실한 용역 성과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 경쟁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 권한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술적으로 연구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선정되고 초당적 인적 구성으로 선택적으로 연구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2) 외유성 논란 여전한 지방의회 해외연수...코로나19 풀리니 붓물(연합뉴스, 2023.3.27.)

3) 이와 관련해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것임.

- 이에 사무국에서는 구성요건과 주제 등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연구 단체의 체계적 관리와 용역의 우선순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운영 지원 계획이 필요해 보임.
- 다섯째,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2024년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은 성인지 예산이 전무함.
- 국회사무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의정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에서도 성별 영향의 기민성을 발휘하여 ‘모의의회 운영’ 과 ‘의원역량개발 사업’ 등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겠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참고]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1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	10,736	
2	공무원증 및 부속품 구매	사무관리비	160	
3	임용장 및 케이스 구매	사무관리비	225	
4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공공운영비	16,800	
5	인사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6	퇴임직원 등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7	연구단체 운영 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8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발제자, 토론자 수당)	행사실비지원금	5,400	2023 추경
9	의원연구실 등 부속실 환경개선	시설비	13,810	
10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PC 16대, 모니터 16대)	자산및물품취득비	24,832	
11	냉장고 구매(5대)	자산및물품취득비	3,280	
12	컴퓨터 속기기계 구매 (4대)	자산및물품취득비	21,780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